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내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안 제2조)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 현행 월 550,000원 → 개정 월 900,000원
 - 보조활동비 : 월 200,000원(신설)
-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1)
 - 자치구의회 국내여비 기준 중 의장·부의장 숙박비
: 현행 1야당 41,000원 → 개정 1일당 46,000원
 - 자치구의회 의원 국내여비 기준 중 의원 숙박비
: 현행 1야당 22,000원 → 개정 1일당 25,000원
-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외여비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신 덕 찬)

-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은 실비보상적 경비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비보상의 취지에 비추어 보다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4년도부터 실비액을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2004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됨.